



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 판 결

사 건 2014고단3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
( 명예훼손 )

피 고 인 전 ( ) ( -00000000 ), ( )  
주거 서울 강남구 ( ) ( )  
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( )

검 사 임길섭(기소), 장대규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탐  
담당 변호사 박정익, 조영선, 이승연

판 결 선 고 2014. 8. 22.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  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 
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(주)KT의 직원으로서 2009. 9.경부터 (주)KT 노동조합 전임노조원으로 활동



하는 사람이고, 피해자 조태욱은 (주)KT의 직원으로서 (주)KT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. 4.경 해고된 사람이며, 김[REDACTED]은 (주)KT에서 근무하던 중 2013. 6.경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13. 8. 8.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 있는 KT 본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, 사실은 위 김[REDACTED]은 개인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여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김[REDACTED]의 장례식장에서 위 김[REDACTED]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, KT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(www.kttu.or.kr) 게시판에 '작작들 해라'라는 제목으로 '얼마전 직원 상 당했을 때 가 보니 해고된 조모씨가 와서는 산재로 다 처리해 줄 것처럼 말하던데 사기 좀 그만 치쇼. 될걸 된다고 해야지. 상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. 그게 인간이 할 것이 더냐.'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1.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1. 조태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1. 이[REDACTED], 이[REDACTED], 엄[REDACTED], 류[REDACTED], 이[REDACTED], 장[REDACTED]의 각 진술서
1. 인터넷 출력물
1. 각 녹취록
1. 수사보고(증거기록 1권 46면)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(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한 점, 징역형 선택)

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 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##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

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, 심■■■■ 또는 박■■■■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, 심■■■■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, 박■■■■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■■■■의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산재 또는 보상을 언급하면서 유족한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,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하였고,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해들은 말과도 다른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,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.

## 양형이유





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,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참작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 임정택 \_\_\_\_\_





# 등본입니다.

2014. 8. 25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보 마 지 영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